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48
----------	------

제출년월일 : 2015. 11. 18.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2013년 8월 안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이후 수차례에 걸친 「영유아 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
-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요청 및 법령의 근거 없는 어린이집 수탁규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 삭제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보육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용어 및 기능 정비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감면대상 확대 정비
- 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내용정비
- 마.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보육사업 지침 중복사항 삭제
- 바. 근거 없는 어린이집 수탁규정 제한 내용 삭제
- 사.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5. 10. 8. ~ 2015. 10. 28.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야간에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을 “시간연장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동에” 를 “아동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안산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 를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17호(종전의 제15호) 중 “운영지원”을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으로 한다.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10.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14.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15.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6.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제15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등” 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

해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일로부터 3년”을 “3년”으로,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료로 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국가보훈 기본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②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 ③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를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부터 제6항(종전의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재위탁은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수탁자는 위탁(재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 사실을 재원아동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위탁을 제한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 아동별”을 “보육아동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4.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6. 영유아 우유급식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7. 평가인증관련 지원 비용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 ④ 시장은 법 제53조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센터의 설치·운영자,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보육정책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보육정책과장 정 천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보육정책제작 박 현 정
	담당자 성명·전화	이 은 희 (행정 2265)

[별표 1]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구분	시설명	주소	비고
국공립	시립감골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69 (사동)	
국공립	시립단원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54 (고잔동)	
국공립	시립대덕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북길 7(원곡동)	
국공립	시립대부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골길 17 (대부북동)	
국공립	시립루씨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5안길 10-9 (본오동)	
국공립	시립달미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 (선부동)	
국공립	시립별★빛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로 15 (초지동)	
국공립	시립본오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98 (본오동)	
국공립	시립부곡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6길 21 (부곡동)	
국공립	시립선부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48 (선부동)	
국공립	시립성안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3길 9 (사동)	
국공립	시립수암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길 26 (수암동)	
국공립	시립신길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3 (신길동)	
국공립	시립아기별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4, 507동 1층 (신길동,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국공립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 17 (신길동)	
국공립	시립와동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4길 9 (와동)	
국공립	시립와동영아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12 (와동)	
국공립	시립원초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100 (초지동)	
국공립	시립월피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5 (월피동)	
국공립	시립이동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51 (이동)	
국공립	시립안산스마트허브 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13(신지번 미확정)	

[별표 2]

도서·장난감 대여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제17조 관련)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대상	구비서류	대여료
영유아 및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연 10,000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무료
다자녀가족	신분증 다동이카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외국인 등록증	무료

○ 대여기준 : 장난감 1회 2점 이하, 도서 1회 5권 이하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

2. 프로그램 이용료

프로그램명	대상	수강료	비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영유아 및 보호자	10,000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는 1회 기준임 -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로 수납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제1호 “도서·장난감 대여”의 구비서류와 같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무료	
	다자녀가족	무료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	무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무료	
보육교직원 교육 및 세미나	보육교직원	20,000원 이하	

< 불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생략)</p> <p>6. “특수어린이집” 이란 영아, 장애아 등 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u>야간에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어린이집</u>을 말한다.</p> <p>7. “취약보육” 이란 영아·장애인·「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u>아동에</u> 대한 보육을 말한다.</p> <p>8. “방과후 보육” 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 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현행과 같음)</p> <p>6. “특수어린이집” 이란 영아, 장애아 등 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u>시간연장형 어린이집</u>을 말한다.</p> <p>7. “취약보육” 이란 영아·장애인·「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u>아동 등</u>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p> <p><삭제></p>
<p>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제6조(기능)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p> <p>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u>안산시 보육정보센터</u>(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u>보육정보센터</u> 관할에 가정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시설 등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둘 수 있다.</p>	<p>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u>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u>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u>센터</u> 관할에 가정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시설 등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둘 수 있다.</p>
<p>제14조(기능) <u>보육정보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u>어린이집 이용자에</u>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p>	<p>제14조(기능) <u>센터</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u> 관한 상담 및 컨설팅</p>

5. ~ 8.(생략)

9.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운영

10.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11.~13. (생략)

14. 시급한 상황 발생등에 대비한 일시보육

<신 설>

<신 설>

1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등) ① 보육 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생략)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3년에 한하여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5. ~ 8.(현행과 같음)

<삭제>

10.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11.~13. (현행과 같음)

14.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15.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6.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1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의2(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와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

1~3 (생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
 6. (생략)
 7. (생략)

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여료와 이 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료와 수강료를 반환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1. (생략)
 - 가. (생략)
 - 나. 보육정보센터의 사정으로 도서 및 장난
감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생략)
 - 가. (생략)

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이 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 상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절액 감염할 수 있다.

〈삭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8조(납부 및 환불) ①(현행과 같음)

- ②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센터 -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육정보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시행규칙」별표 8의 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③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나. 센터 -----.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②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 ③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재위탁은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부자나 임대자가 원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 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년 시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의 원칙을 통해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준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 ①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은 원장은 65세까지로 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60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된 결산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⑥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 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② (제3항과 같음)

<삭제>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어린이집에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⑩ 수탁자는 위탁(재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 사실을 재원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위탁의 제한)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자 및 원장 임용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5년으로 제한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⑦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 사실을 재원아동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제28조(위탁의 제한) <삭제>

②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위탁을 제한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4.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보육

료 차액 지원

6. 영유아 우유급식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7. 평가인증관련 지원 비용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아동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수어린이집 및 방과 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정 보센터의 설치·운영자(이하 “시설”이라 한다),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2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센터의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별표 1]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구분	시설명	주소	비고
국공립	시립감골어린이집	상록구 선진로 69 (사동)	
국공립	시립단원어린이집	단원구 화정천동로 254 (고잔동)	
국공립	시립대덕어린이집	단원구 원선로북길 7(원곡동)	
국공립	시립대부어린이집	단원구 장골길 17 (대부북동)	
국공립	시립루씨어린이집	상록구 각골로5안길 10~9 (본오동)	
국공립	시립문화센터어린이집	단원구 선부광장로 47 (선부동)	
국공립	시립별★빛어린이집	단원구 신촌로 15 (초지동)	
국공립	시립본오어린이집	상록구 이호로 98 (본오동)	
국공립	시립부곡어린이집	상록구 경재로6길 21 (부곡동)	
국공립	시립선부어린이집	경기도안산시단원구자곡로48 (선부동)	
국공립	시립성안어린이집	상록구 성안3길 9 (사동)	
국공립	시립수암어린이집	상록구 수암길 26 (수암동)	
국공립	시립신길어린이집	단원구 삼일로 13 (신길동)	
국공립	시립아기별어린이집	단원구 신길로 94, 507동 1층 (신길동,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국공립	시립안산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단원구 신길중앙로 17 (신길동)	
국공립	시립외동어린이집	단원구 사세충별로4길 9 (외동)	
국공립	시립와동영아 어린이집	단원구 선부로 312 (외동)	
국공립	시립원초어린이집	단원구 원초로 100 (초지동)	
국공립	시립월피어린이집	상록구 광덕산안길 5 (월피동)	
국공립	시립이동어린이집	상록구 매화로1길 51 (이동)	
국공립	시립안산스마트 허브어린이집	단원구 원시동 773-13(신지번 미확정)	

[별표 1]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구분	시설명	주소	비고
국공립	시립감골어린이집	상록구 선진로 69 (사동)	
국공립	시립단원어린이집	단원구 화정천동로 254 (고잔동)	
국공립	시립대덕어린이집	단원구 원선로북길 7(원곡동)	
국공립	시립대부어린이집	단원구 장골길 17 (대부북동)	
국공립	시립루씨어린이집	상록구 각골로5안길 10~9 (본오동)	
국공립	시립달미어린이집	단원구 선부광장로 47 (선부동)	
국공립	시립별★빛어린이집	단원구 신촌로 15 (초지동)	
국공립	시립본오어린이집	상록구 이호로 98 (본오동)	
국공립	시립부곡어린이집	상록구 경재로6길 21 (부곡동)	
국공립	시립선부어린이집	경기도안산시단원구자곡로48 (선부동)	
국공립	시립성안어린이집	상록구 성안3길 9 (사동)	
국공립	시립수암어린이집	상록구 수암길 26 (수암동)	
국공립	시립신길어린이집	단원구 삼일로 13 (신길동)	
국공립	시립아기별어린이집	단원구 신길로 94, 507동 1층 (신길동,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국공립	시립안산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단원구 신길중앙로 17 (신길동)	
국공립	시립외동어린이집	단원구 사세충별로4길 9 (외동)	
국공립	시립와동영아 어린이집	단원구 선부로 312 (외동)	
국공립	시립원초어린이집	단원구 원초로 100 (초지동)	
국공립	시립월피어린이집	상록구 광덕산안길 5 (월피동)	
국공립	시립이동어린이집	상록구 매화로1길 51 (이동)	
국공립	시립안산스마트 허브어린이집	단원구 원시동 773-13(신지번 미확정)	

[별표 2]

도서장난감 대여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제17조 관련)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대상	구비서류	대여료
영유아 및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연 10,000원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분증 수급권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무료
다자녀가족	신분증 다동이카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무료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신분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무료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	신분증 5.18민주유공자 증명서	무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외국인 등록증	무료

○ 대여기준 : 장난감 1회 2점 이하, 도서 1회 5권 이하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

2. 프로그램 이용료

프로그램명	대상	수강료	비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영유아 및 보호자	10,000 원 이하	이용료는 1회 기준임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로 수납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제1호 "도서 장난감 대여"의 구비서류와 같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무료	
	다자녀가족	무료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무료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무료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	무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무료	
보육교직원 교육 및 세미나	보육교직원	20,000 원 이하	

[별표 2]

도서장난감 대여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제17조 관련)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대상	구비서류	대여료
영유아 및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연 10,000원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무료
다자녀가족	신분증 다동이카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	신분증 국가보훈증명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외국인 등록증	무료

○ 대여기준 : 장난감 1회 2점 이하, 도서 1회 5권 이하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

2. 프로그램 이용료

프로그램명	대상	수강료	비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영유아 및 보호자	10,000 원 이하	이용료는 1회 기준임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로 수납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제1호 "도서 장난감 대여"의 구비서류와 같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무료	
	다자녀가족	무료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	무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무료	
보육교직원 교육 및 세미나	보육교직원	20,000 원 이하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748
------------	------

제안년월일 : 2015년 12월 9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이용료 감면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내용을 맞추고자 함
- 1개 운영체가 시립어린이집을 2개소 이상 운영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제한사항을 현행대로 규정함

□ 주요내용

- 안 제17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관련 조례의 대상으로 정리
- 안 제28조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2항의 위탁 제한 시점 을 정확히 명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1항 중 “자부터”를 “자로부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안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8조(위탁의 제한)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위탁 취소 또는 해지일 부터 5년간 위탁을 제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와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②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p> <p>1~3생략</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p> <p>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p> <p>제28조(위탁의 제한)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p> <p>②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자 및 원장 임용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5년으로 제한한다.</p>	<p>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사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 ----- -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u>「국가보훈 기본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u> <삭제></p> <p>제28조(위탁의 제한) <삭제></p> <p>②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최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위탁을 제한한다.</p>	<p>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사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 ----- -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1~3 (개정안과 같음)</p> <p>4. <u>「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 <개정안과 같음></p> <p>제28조(위탁의 제한)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p> <p>②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최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위탁 취소 또는 해지일부터 5년간 위탁을 제한한다.</p>